

#### [서식 예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, 보관인선임 등

# (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)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,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★★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주식회사◈◈건설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청구채권의 표시

금 ㅇㅇㅇ워정

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◎◎법률사무소 작성의 20○○년 제○○○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손해배상약정금

##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## 신 청 취 지

1.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



구권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.
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○○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.
- 5.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송달일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원 인

- 1.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◎◎법률사무소 작성의 20○○년 제○○○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금 ○○○원의 손해 배상약정금 채권이 있는바,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○○회에 걸쳐 매월 ○일에 금 ○○○원씩 채권자에게 분할변제 하기로 하되 1회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불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, 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 으로서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 다.

# 첨 부 서 류

1. 가압류 결정문	1통
1.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	1통
1.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	1통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

20 O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

[별 지]

##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

## 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[도로명주소]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 ◎◎아파트 제107동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

1층 291.80㎡ 2층 283.50㎡

3층 283.50m² 4층 283.50m²

5층 283.50m² 6층 283.50m²

9층 283.50m² 10층 283.50m²

11층 283.50㎡ 12층 283.50㎡

13층 283.50㎡ 14층 283.50㎡

15층 283.50㎡ 지층 282.38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구 조 철근콘크리트조

건물번호 901호

면 적 131.40 m²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: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○○○m² 2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 대 ○○○m²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위 대지의 43685.4분의 58.971. 끝.

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44조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
	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
	·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), 재판을 고지 받은 날			
불복절차 및	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.			
기간	간 ·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하여야 함			
	(민사집행법 제16조).			
,,) O	·인지액: 〇〇〇원(	☞민사접수서류	에 붙일 인지액 참조)	
비 용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
·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2				
	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			
기 타	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			
	의의 권리이전등기	절차를 보관인어	]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.	
	위의 경우에 보관인	은 채무자명의	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	
	채무자의 대리인이 됨(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, 제3항).			
	·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진	선명령은 강제력이	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	
	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여	에 협력하지 않을	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	
	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	하여야 함(민사집행	]법 제244조제4항).	

#### ※ 제출법원{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}

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- 4. 그러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(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었는 곳의 지방법원)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권리이전명령을 내린법원이 다를 수 있고,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



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. 또한, 보관인선임과 권리이 전명령의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.